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656

발의연월일: 2025. 1. 20.

발 의 자:이수진·송옥주·추미애

박해철 · 서미화 · 한정애

김정호 · 용혜인 · 허성무

전진숙 의원(10인)

제안이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인력 양성과 공급이 필수적임.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독선적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의료대란이 야기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급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심의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체계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 양성 규모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현행법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와 수요자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 논의를 통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을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를 "실무위원회·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 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의 수급추계를 위하여 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두다.
 - ② 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직종별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해당 의료인력의 국가 단위 수급 전망
 - 2. 해당 의료인력의 지역 단위 수급 전망
 - 3. 해당 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 정원 규모(전국단위 및 시·도 단위 정원 규모를 말한다)
 -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특별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진료권별・진료과

- 목별·공공의료부문별 해당 의료인력의 수급 전망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제1항의 보건의료 직종별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의료인단 체,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 2. 제1항의 보건의료 직종별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 3. 보건의료 또는 인력수급추계에 관한 전문가로서 제1호와 제2호의 단체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 4.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각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의료인력 수급관리정책
 -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 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분과위원회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 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는 특별위원회를-----⑤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과위 -----실무위원회·분과위원 원회의 구성 · 운영과 그 밖에 회 및 특별위원회의-----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의료인력 수급추계특 <신 설> 별위원회) ① 「의료법」 제2 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 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및 간호 사의 수급추계를 위하여 위원 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 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직종 별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 사항을 심의한다.
- 1. 해당 의료인력의 국가 단위 수급 전망
- 2. 해당 의료인력의 지역 단위 수급 전망
- 3. 해당 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 정원 규모(전국단위 및 시·도단위 정원 규모를 말한 다)
-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 치는 사항
- ③ 특별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진료권별· 진료과목별·공공의료부문별 해당 의료인력의 수급 전망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야 한다.
- ④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 관이 위촉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제1항의 보건의료 직종별 공 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의 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가 추 천하는 사람 7명

- 2. 제1항의 보건의료 직종별 수 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노 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 명
- 3. 보건의료 또는 인력수급추계 에 관한 전문가로서 제1호와 제2호의 단체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 4.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에 서 각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 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특별위 원회 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략)

<신 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22조(위원회의 기능) <u>①</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의하다 -----

- 1. ~ 4. (현행과 같음)
- 5. 의료인력 수급관리정책
-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사 항을 심의할 때에는 특별위원 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